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2021. 6

권선국·장지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2021. 6

권선국·장지영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외부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며,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법인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법인에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직접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법인 재무보고 목적이 학교법인 재무보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단기적 조화 방안으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재무제표 명칭 통일, 발생주의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도입,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도입 등을 반영하여 특례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법인의 특수성과 학교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사학기관 별도의 공시양식을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양식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례규칙의 예산에 대한 조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에 관한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학교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부형 등 재정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금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자금제공 여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국공립·사립대학 간 정보가 비교가능한 대학회계기준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립대학은 특례규칙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법」과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무제표는 별개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고,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재무제표와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도 별개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다 같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므로, 당연히 재무정보도 비교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학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재무정보도 당연히 대학의 정보와 비교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대학회계기준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일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무정보의 비교를 통하여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설립별(국공립, 사립)·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공립·사립을 망라한 학교에 적용되는 단일 회계회계기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재무보고는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일정한 틀에 의해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자산·부채·순자산과 수익 및 비용)가 동일한 형태의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원칙과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재무제표가 작성된다면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반감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설립별·학교급별로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설립별·학교급별의 특수성은 단일 회계기준에서도 조문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 론 .....	1
II.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주요 현황 및 쟁점사항 .....	2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적용 현황 .....	2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정 배경, 경과, 적용 대상 등 전반적인 개요 .....	2
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적용의 쟁점사항 .....	4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운영 현황 .....	5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개정 및 실무해석 등 운영 현황 검토 .....	5
나. 학교법인 외부회계감사 및 재무제표 공시 제도 .....	7
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운영의 쟁점사항 .....	8
3. 해외사례 .....	8
가. 미국의 사학기관 대상 회계기준 운영 사례 검토 .....	8
나. 일본의 사학기관 대상 회계기준 운영 사례 검토 .....	10
III.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 차이 분석 및 쟁점사항 .....	12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분석 .....	12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주요 내용 분석 .....	12
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회계처리상의 특징 분석 및 쟁점사항 .....	15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 .....	28
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분석 .....	28
나. 주요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	37

---

---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	58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학교법인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저하 .....	58
나. 국세청 공시(공익법인회계기준 기반)양식 검토 .....	65
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정보를 국세청 공시 (공익법인회계기준 기반)를 위해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 및 제반 문제점 .....	73

#### IV.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단계적 조화 방안 ..... 75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 가능성 분석	75
가. 학교법인의 특수성 검토 .....	75
나. 학교법인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시 예상되는 회계상 문제점 분석 .....	76
다. 국공립대학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검토 .....	77
라. 산학협력단 회계와의 비교가능성 검토 .....	79
마. 조화가능성 검토 .....	79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단기적 조화 방안	80
가.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해결방안 모색 .....	80
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문제 해결방안 모색 .....	83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 ..	84
가. 하나의 회계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	84
나. 별도의 회계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 .....	84

---

---

V. 결 론 .....	89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 .....	89
2. 추후 과제 제안 .....	91
가. 국공립·사립대학 간 정보가 비교가능한 대학회계기준의 제정 검토 .....	91
나. 학교회계기준의 제정 검토 .....	92
다. 외부회계감사 및 국세청 공시대상 학교의 범위 검토 .....	92
참고문헌 .....	93
부 록 .....	95
〈부록 1〉 학교법인 회계별 특징 .....	95
〈부록 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의무공시 .....	99

---

## 표목차

---

〈표 II-1〉 특례규칙의 개정 사항 .....	5
〈표 II-2〉 결산일정 .....	7
〈표 III-1〉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 비교 .....	12
〈표 III-2〉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의 구성 및 내용 .....	13
〈표 III-3〉 사학기관 대차대조표 .....	19
〈표 III-4〉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유동자산) .....	23
〈표 III-5〉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 .....	24
〈표 III-6〉 사학기관 운영계산서 .....	27
〈표 III-7〉 주요 구분회계 현황 .....	31
〈표 III-8〉 재무제표 작성단위 및 구분회계 .....	33
〈표 III-9〉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성 .....	36
〈표 III-10〉 특례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 .....	38
〈표 III-11〉 공익법인 운영성과표 구조 .....	52
〈표 III-12〉 공익법인회계기준과 특례규칙의 비교 요약 .....	54
〈표 III-13〉 공익법인회계기준에는 없으나 특례규칙에 있는 조항 .....	58
〈표 III-14〉 특례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대차대조표(관/항으로 표시)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무상태표 .....	61
〈표 III-15〉 특례규칙 별지 제5호에 따른 운영계산서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성과표 .....	63
〈표 III-16〉 교육분야 기부금이 가장 많은 10개 학교법인 .....	66
〈표 IV-1〉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한 사학기관회계기준 구성(안) .....	86

---

## 그림목차

---

[그림 Ⅲ-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경과 .....	29
[그림 Ⅲ-2]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 .....	29
[그림 Ⅲ-3]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회계구분 .....	44



---

# I. 서론

---

공익법인회계기준이 2017년 12월 최초 제정·고시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공익법인은 2018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외부회계감사와 결산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1976년에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는 “공익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2017년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2017년에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초로 활용되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관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기부자, 주무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각 법령에서 정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국세청 공시를 위해 학교법인의 경우 재무정보를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 및 재무정보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학기관의 회계현황 및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 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주요 현황 및 쟁점사항

---

###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적용 현황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정 배경, 경과, 적용 대상 등 전반적인 개요

#### 1) 제정 배경

사립대학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을 말하는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구별되고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한 재무보고가 핵심이지만, 교육을 주로 제공하는 사립대학은 교육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무적인 여건은 어떠한지가 재무보고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립대학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대부분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평가, 대학 경영을 감독·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립대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회계기준의 제정 및 적용이 필요했다.<sup>1)</sup>

---

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 7.

따라서 학교법인의 회계는 영리기업에서와 같은 기간손익계산보다는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수지계산의 회계가 중요시되어 발생주의(accrual basis) 회계원칙보다는 현금주의 회계 또는 수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basis)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다.

## 2) 경과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 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적용 대상

재무회계규칙은 학교법인·공공단체 이외의 법인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적용된다. 따라서 재무회계규칙은 사립학교의 회계와 재무에 관한 기본규정으로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된다.

특례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학교의 부속 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 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적용의 쟁점사항

재무회계규칙은 사학기관의 회계뿐만 아니라 계약, 감사 및 재산, 물품, 장부와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원칙과는 달리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례규칙은 사립대학 등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적용을 위해 제정된 회계기준이다. 특례규칙은 복식부기 원리를 기초로 한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 회계처리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준이 특례규칙이며 동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체계상으로는 재무회계규칙이 특례규칙의 상위 개념이다. 그러나 재무회계규칙의 내용 중 회계에 관한 사항을 사립대학에 적용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례규칙이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다.

특례규칙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상의 복식부기와 차이가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예산회계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수익인식에 있어서 예산회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 현금주의에 근접한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점 등이다.<sup>2)</sup> 또한 특례규칙이 예산회계제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특례규칙에 회계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사립대학은 비영리기관으로서의 법적 특징으로 인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과는 구별되는 회계의 목적과 기능을 갖게 된다. 사립대학 회계의 목적은 「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에서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에서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은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만, 회계정보 제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p. 24~25.

##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운영 현황

###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개정 및 실무해석 등 운영 현황 검토

특례규칙은 1981년 2월 28일 문교부령 제485호로 제정된 후 대학 환경의 변화, 재정규모의 확대, 사학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총 15차례 (1987.2.6, 1991.3.16, 1996.2.29, 1999.1.29, 2001.1.31, 2005.9.27, 2006.8.2, 2008.3.4, 2009.12.22, 2014.3.6, 2016.4.20, 2018.5.29, 2019.9.17, 2020.9.25, 2021.1.6.)의 개정이 있었다.

〈표 II-1〉 특례규칙의 개정 사항

일자	주요 개정사항
1987년 2월 6일 (일부개정)	- 기본금 및 적립금에 관한 회계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정 - 사학기관의 재무·회계와 관련된 계정과목을 일부 조정
1991년 3월 16일 (일부개정)	-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1996년 2월 29일 (전부개정)	- 예산의 부속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편성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 -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도록 개정 - 법인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변동예산 도입 - 학교의 회계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기간별 비교를 위해 일관된 회계원칙의 준수를 규정 - 재무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자산 및 부채의 분류기준 및 계리원칙을 정함 - 운영수익을 순액에서 총액표시로 하도록 하고, 운영비용의 구분 및 표시방법을 개정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종합적인 자금수지, 재무상태 및 운영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구성서류 및 작성방법을 정함
1999년 1월 29일 (일부개정)	- 사립 전문대학의 재정규모 증대로 인해 종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
2001년 1월 31일 (일부개정)	-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2005년 9월 27일 (일부개정)	- 사학기관의 주요 예산내역과 결산내역을 일정기간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개정

〈표 II-1〉의 계속

일자	주요 개정사항
2006년 8월 2일 (일부개정)	- 예·결산서에 공개에 대한 사항에 대한 법률체계 변경에 따른 개정
2008년 3월 4일 (일부개정)	-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2009년 12월 22일 (전면개정)	- 감가상각제도의 도입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 -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 - 상기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2014년 3월 6일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 투자유가증권 시가평가손익을 기본금조정으로 처리
2016년 4월 20일	-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서식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 및 서식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 변경) (구비서류 → 첨부서류)
2018년 5월 29일	- 부속병원회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 - 수익사업회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 -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2019년 9월 17일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수불명세서 → 출납명세서)
2020년 9월 25일 (일부개정)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을 법인회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회계로만 처리하도록 함
2021년 1월 6일 (일부개정)	- 법인회계 예산안의 이사회 제출기한을 학교회계 예산안의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변경함 -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예산부속명세서에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를 신설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p. 25~26(일부 수정).

현재 특례규칙의 개정 업무는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특례규칙에 대한 질의응답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 나. 학교법인 외부회계감사 및 재무제표 공시 제도<sup>3)</sup>

학교법인 및 대학교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업무를 실시하고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10일 내(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표 II-2〉 결산일정

구분	기관	일정	기한	관계법령(등)
학교의 장/이사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이사장 학교의 장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	4.19까지	특례규칙 제42조①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	-	-	사립학교법 제31조③
결산 심의·확정	이사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4.30까지	특례규칙 제42조②
심의·확정된 결산서 제출 및 공개	이사장 학교의 장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5.31까지	사립학교법 제31조① 시행령 제14조①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 14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은 결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때 외부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외부감사범위 확대와 맞물려 학교법인을 감사한 독립된 공인 회계사 및 회계법인을 교육부장관이 감사 과정 및 결과를 감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교법인의 결산과 그에 대한 외부감사의 효과성

3)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p. 141~142.

을 증대시켰다(「사립학교법」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와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에 의해서 선정된다. 현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 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운영의 쟁점사항<sup>4)</sup>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으로 대학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대학 현장에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계기준 불명확 문제<sup>5)</sup>로 회계처리 질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립대학회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관리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립대학회계기준의 제·개정권자가 교육부이어서 회계기준담당자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회계 질의에 대한 실제 답변은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주로 수행하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회계기준을 해석하는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6)</sup>

### 3. 해외사례

#### 가. 미국의 사학기관 대상 회계기준 운영 사례 검토

미국 사립대학의 회계처리는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의한 ASC(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Topic 958 Not-For-Profit Entities를 따른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인 Topic 958은 적용범위에

4) 권선국·전중열·장지영, 『대학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6, pp. 32~33.

5) 영리기업 대비 회계처리기준 설명 및 계정과목 미흡, 재정과 회계의 혼재 등

6)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난 20여 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집계·분석·공시, 사립대학 회계처리 상담 및 교육, 사립대학 회계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수행 등을 수행하였음.

사립대학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운영계산서(statement of activities),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이고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고, 순자산은 영구제한순자산(Permanently restricted net assets), 일시제한순자산(Temporarily restricted net assets), 무제한순자산(Unrestricted net assets)으로 구분한다. 운영계산서는 순자산의 변동(The change in net assets), 영구제한순자산의 변동(The change in permanently restricted net assets), 일시제한순자산의 변동(The change in temporarily restricted net assets), 무제한순자산의 변동(The change in unrestricted net assets)으로 구분하여 수익, 비용, 순손익을 표시한다.<sup>7)</sup>

대학 재무보고시 사용하는 비용은 기능적으로 교육(instruction), 연구(research), 봉사(public service), 학습지원(academic support), 학생서비스(student services), 보조사업(auxiliary enterprises), 기관지원(institutional support)으로 구분된다. 교육, 연구 및 봉사가 핵심 프로그램으로 간주되며, 학습지원, 학생서비스, 보조사업은 핵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조사업은 서점, 기숙사, 식당 및 대학대항경기(intercollegiate athletics)를 포함한다. 기관지원은 관리 및 모금 비용을 포함한다.<sup>8)</sup>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측정한다. 기부나 전입을 통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모든 유가증권은 회계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유형자산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배분하며, 수익인식은 GAAP를 따르는 등 인식 및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GAAP와 다르지 않다.

미국대학경영자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NACUBO)는 1952년부터 대학경영(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책자를 통해 대학회계기준을 자율적으로 제공했다. 1976년부터는 FASB에서 비영리부문에 관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7) 삼일회계법인, 『사립대학 회계기준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3, p. 23.

8) Ives, M., L. Johnson, J. Razek, and G. Hosch, *Introduction to Governmental and Not-for-Profit Accounting*, Sixth Edition, 2009, p. 497.

사립대학의 회계는 FASB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sup>9)</sup> NACUBO는 현재 대학 재무 회계 및 보고 매뉴얼(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Manual for Higher Education)을 통하여 대학회계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주체는 FASB이며 NACUBO는 대학경영자에게 회계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미국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FASB의 비영리부문 회계기준에 기초하여 대학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기초한 후 대학에 관한 특수한 사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립대학회계기준을 수정 또는 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재무보고시에는 교육, 연구, 봉사 등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용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나. 일본의 사학기관 대상 회계기준 운영 사례 검토

일본의 경우 학교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부과학성령의 「학교법인회계기준(學校法人會計基準)」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학교법인회계기준의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사업활동수지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로 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회계정책 등에 대해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주석 기재사항으로 중요한 회계정책,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사유 및 그에 따른 증감액,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과 관련한 계정과목과 잔액 등, 담보제공자산, 기본금과 관련한 변동 등 몇 가지를 정하고 있다. 학교법인회계기준은 법조문 형태로 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구성뿐만 아니라 인식기준(발생주의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자산의 평가, 감가상각, 유가증권의 평가, 대손상각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례규칙과 매우 흡사하다.<sup>10)</sup>

자금수지계산서는 운영수지는 물론 자본수지 등 모든 자금수입과 지출을 보고한다. 사업활동수지계산서는 매 회계연도의 운영수입 및 운영지출의 내용과 균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대차대조표는 학

9) 공립대학에는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회계기준이 적용됨.

10) 삼일회계법인, 『사립대학 회계기준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3, pp. 22~23, 일부 수정함.

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로 자산, 부채, 기본금으로 구성된다.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부채 및 고정자산부채로 구분하고 기본금은 제1호기본금 내지 제4호기본금으로 구분한다.

사립대학회계의 제·개정 주체는 문부과학성이며, 사립대학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본 「사립학교진흥조성법」에 의해서 일본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사학진흥사업본부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며 사립대학회계와 관련해서는 학교법인회계 Q&A와 학교법인의 자산운용상황(집계결과) 보고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사립대학회계의 운영 상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 Ⅲ.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 차이 분석 및 쟁점사항

####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분석

#####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주요 내용 분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의 경우,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의 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설립된 모든 학교법인과 학교이다. 주요 내용은 예산과 결산, 회계, 재산, 물품, 장부와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대학의 예산편성, 회계처리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규정할 목적으로 특례규칙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적용대상은 사립대학과 그 학교법인이다. 특례규칙은 사립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적용을 위해 제정된 회계기준으로 복식부기 원리를 기초로 한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 회계처리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준이 특례규칙이며, 동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이를 요약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 비교

구 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적용 대상	모든 학교법인과 학교	사립대학과 그 학교법인
주요 내용	예산과 결산 회계 재산 물품 장부와 서식 등	예산 회계 결산
적용 우선순위	* 사립대학과 그 학교법인은 특례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여타의 학교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 사립대학도 특례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영리법인 세무가이드」, 2020, p. 45.



〈표 III-1〉의 계속

재무회계규칙		특례규칙	
구성	내용	구성	내용
제4절 계약 35조 계약의 원칙 ~ 40조 감사조서의 작성 3장 회계	· 계약 - 계약의 원칙, 계약담당자, 계약서의 작성, 보증금, 직영공사, 감사조서의 작성 · 감사 - 감사	15조 회계원칙 ~ 38조 종합재무제표 등의 작성방법	· 회계원칙의 설명 · 대차대조표,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의 작성원칙 및 계정과목 ·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 대손상각 및 자산폐기기준 ·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 감가상각제도 · 종합재무제표의 작성
제5절 감사 41조 감사			
4장 재산	· 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자 · 등기 등의 절차, 증자보고 · 소유권의 이전 등	39조 결산의 내용 ~ 42조 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 결산 서류 ·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 결산서의 제출일정
5장 물품	· 물품의 범위 ·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의 관리·불용품의 처리		
6장 장부와 서식	· 비치할 장부와 서류·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 각종 서식		
7장 보칙	· 재무보증 금지·회계 관계직원의 책임 · 사무의 인계인수·준용, 위임		
부칙	· 시행일과 법률개정사항		

출처: 저자 작성

비영리법인은 회계연도 시작 전 예상되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예상한 후 지출 예산을 편성한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역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대부분이며, 회계처리 방법은 제27조(회계의 방법)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을 뿐 대부분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1981년에 제정된 특례규칙은 예산뿐만 아니라,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 및 결산이 복식부기를 기본 전제로 되어 있지만, 영리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예산회계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수익인식에 있어서 예산회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 현금주의에 근접한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점 등이다. 이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립대학은 종전의 현금주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경리형태인 단식부기에서 벗어나 특례규칙에 따라 복식부기를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 자산 및 부채의 체계적 관리, 대학 전체의 재무상태 파악, 대학운영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인식을 통한 명확한 경영성과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sup>11)</sup>

#### 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회계처리상의 특징 분석 및 쟁점사항

사학기관의 회계처리규정은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과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특례규칙이 있다. 특례규칙이 복식부기 회계제도 적용을 위해 제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특례규칙을 중심으로 회계처리 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특례규칙이 적용되는 단위는 법인회계의 일반업무회계와 학교회계의 교비회계<sup>12)</sup>이다. 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이며 이에 추가하여 합산·종합재무제표가 포함된다.

11)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p. 24-25.

12) 학교가 받은 기부금, 수업료, 기타납부금(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이 이에 해당됨.

## 1) 자금계산서

「특례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당해 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자금수입예산과 자금지출예산이 실제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계산서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자금계산서는 회계연도 중의 사립학교의 실제 자금유입과 자금유출을 표기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말의 장부상의 자금잔액과 비교하는 재무제표이다. 이는 일반 영리법인의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지만, 작성방법은 상이하다. 영리법인의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해, 자금계산서의 자금은 순운전자본(유동자산 -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자금계산서에는 예산항목과 지출액이 함께 표기된다. 학교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처럼 다양한 수익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에 맞는 비영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따른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금계산서는 예산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 자금계산서 쟁점사항 1: 자금의 정의

「특례규칙」 제3조(정의)에서 “자금”이라 함은 현금·예금·수표 및 우편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영리법인이 구분 표시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의 현금의 정의와 유사하다. 자금계산서 작성과 관련한 특례규칙 제21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사용이월자금은 기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단기차입금은 제외한 금액)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 특례규칙

-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 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 ②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차입금이 발생되면, 유동자산 중 현금(자금)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당기에 단기차입금 100원을 차입했다고 한다면(이외의 잔액은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100원으로 계상된다.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미래의 자원의 유출을 가져오는 단기차입금을 누락함으로써 과대계상된다. 또한,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제세예수금 및 미지급금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이에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과대평가되어 보고 되는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대한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특례규칙」 제3조 자금에 대한 정의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나) 자금계산서 쟁점사항 2: 비예산(비자금)거래의 처리

자금계산서는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현금주의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예산항목에 없는 운영계산서의 대표적인 계정과목이다.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비고
5224 현물기부금	비자금거래항목으로 자금계산서 영향 없음
5422 외화환산이익	운전자본계정에서 발생하면 자금계산서 영향 있음
5423 외환차익	
5424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처분금액으로 자금계산서 작성하므로 자금계산서 영향 없음
5426 고정자산처분이익	
4252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비자금거래항목으로 자금계산서 영향 없음
4253 무형고정자산상각비	
4422 외화환산손실	운전자본계정에서 발생하면 자금계산서 영향 있음
4423 외환차손	
4424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처분금액으로 자금계산서 작성하므로 자금계산서 영향 없음
4426 고정자산처분손실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외환차손익 또는 외화환산(평가)손익의 경우는 예산항목에 없어 잡이익과 잡손실로 처리하여 자금의 증(감)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서 영리기업이 작

성하고 있는 현금흐름표는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 혹은 ‘영업 활동 무관손익’을 일반적인 현금유출입과는 별도로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자금계산서 작성에 반영하여 현금유출입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금의 증(감)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비현금거래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유형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거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sup>13)</sup>이 대표적인 항목이 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산관련 현물 기부금, 유가증권, 감가상각비는 자금의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아 자금계산서에 보고되지 않는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비고
1	기계기구	XXX	현물기부금	XXX	자기에 영향 없는 거래임
2	투자유가증권	XXX	기본금조정	XXX	자기에 영향 없는 거래임
3	감가상각비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자기에 영향 없는 거래임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실제 자금의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지만 자금계산서에 표시되는 교내장학금(감면고지)과 등록금수입의 경우가 있다. 실제 자금유출입이 없음에도 학비감면처리를 자금계산서에 보고하는 이유는 총액주의에 의거하여 총등록금과 감면액을 계상함으로써, 전체 등록금이라는 정보와 장학금 지급이라는 정보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 2)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기준일<sup>14)</sup> 현재 학교법인 및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

13)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으로 증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방안이 될 것임.

14) 대차대조표의 기준일이라는 의미는 「특례규칙」 제3조에 따라 대차대조표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의 말일을 의미함. 「사립학교법」 제30조 ‘회계연도’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 및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계연도 말은 매년 2월말이 됨.

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 재무보고서이다. 재무상태라는 의미는 학교경영활동에 필요한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원인 부채와 기본금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대차대조표의 양식은 특례규칙 별지4호에 따르며, <표 Ⅲ-3>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는 1년 기준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자산은 1년 기준을 적용하여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분류와 달리 투자와 기타자산이 별개 항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특례규칙은 자산, 부채, 기본금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Ⅲ-3> 사학기관 대차대조표

[자 산]	[부채와 기본금]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유동자금	1. 단기차입금
2. 기타유동자산	2. 예수금
	3. 선수금
	4. 기타유동부채
II. 투자와 기타자산	II. 고정부채
1. 설치학교	1. 장기차입금
2. 투자자산	2. 기타고정부채
3. 기타자산	
4. 원금보존기금	<b>부채총계</b>
5. 임의기금	<b>기본금</b>
III. 고정자산	I. 출연기본금
1. 유형고정자산	II. 적립금(원금보존, 임의)
2. 무형고정자산	III. 기본금조정
	IV. 운영차액
<b>자산 총계</b>	<b>부채와기본금 총계</b>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 가) 대차대조표 쟁점사항 1: 재무제표 명칭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립대학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이 주요 재무제표이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하다. 국가 기관 혹은 영리 혹은 비영리기관의 재무제표에 익숙한 작성자와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 나) 대차대조표 쟁점사항 2: 비예산항목 처리 및 발생주의 적용

대차대조표는 기준일 현재 사립학교의 자산, 부채 및 기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적 사건이 발생하면 자산, 부채, 기본금의 정의에 부합한지 등을 판단하여 인식·측정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해 보고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는 자금계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의 증(감)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거래는 운영계산서에 보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15)</sup> 이러한 구조에서 자금계산서의 예산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회계적 사건은 그 자체가 누락되어 대차대조표에 보고되지 않거나, 과대계상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다음은 유동자산과 관련된 주요지적 사례이다.<sup>16)</sup>

#### 【사례】 학교 명의 개설 계좌 결산 미반영

학교는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학생회비 외 7개 계좌를 학교 명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계좌 잔액에 대하여 결산에 미반영함

원칙적으로 교비회계의 수입이 아닌 학생회비, 동창회비, 졸업앨범비 등을 학교 명의 계좌로 관리해서는 아니 됨. 다만, 입·출금 통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명의 계좌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부외계좌로 존재하지 않도록 결산에 포함하여 입금과 출금을 관리하되, 예수금 과목으로 처리하여 세입·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5)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 91.

16)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 181, p. 274.

**【사례】 비용 기간귀속 오류에 따른 미지급금 계상 누락**

학교는 월별로 지출하는 법인카드 결제액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대하여 현금 지출 시 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2020년 2월분에 대한 비용 및 미지급금 계상을 누락함

☞ 학교의 수익 및 비용은 학년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해당 학년도의 수익 및 비용은 동 학년도 결산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

**【사례】 확정 미지급금 계상 누락**

학교는 결산시점에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2020년 2월분 시설용역비 37,854천원에 대한 비용 및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않음

☞ 결산시점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학교가 지급의무를 명확하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지출로 적절히 보고되어야 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181

복식부기를 도입한 여타의 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같이 도입하나 특례규칙 내에는 발생주의라는 표현이 없다. 이로 인해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그리고 선수수익 등 발생주의 회계의 계정과목 또한 특례규칙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서도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령한 등록금선수금은 미리 집행할 수 없으나, 선수수익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다음과 같은 주요 지적사례가 발생한다.

**【사례】 등록금선수금 학기 개시 전 집행**

학교는 등록금선수금을 등록금 전용계좌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학교의 주거래계좌와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부(1,425백만원) 선집행되었음.

**【사례】 등록금선수금 학기 개시 전 집행**

당해연도에 수납된 등록금선수금 중 일부(5,700천원)가 전기 교원 연구비 지급을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선집행 되었음.

☞ 등록금선수금은 등록금 전용계좌에 별도 예치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학기 개시 전 집행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273

### 다) 대차대조표 쟁점사항 3: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유동자산 중에서 유동자금은 현금과 예금의 계정과목이 있으며, 예금에는 금융기관 예금이 포함되나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기금적립금은 투자와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 특례규칙 <별표 2>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의 유동자산 관련 해설은 <표 Ⅲ-4>와 같다.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는 유동성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여 구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례규칙은 유동/비유동 구분이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별표 4> 대차대조표 작성방법 하단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호한 구분 기준(해석 부족)으로 유동자금의 항목에 유동성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동자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부채의 경우, 장기차입금의 상환기일이 1년 이내 도래하여도 유동성 대체하는 처리는 특례규칙에서 언급이 없다. 이론적으로 유동성장기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체적 기준이 없고, 1년 이내 만기도래시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을 대체하게 되면 자금계산서 작성시 단기차입금의 차입, 장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어 실제 현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sup>17)</sup>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이 경우 단기차입금이나 유동성 대체를 하지 않고 장기차입금에서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작성방법의 하단에 간단하게 언급하기보다는 <별표 2>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서에 그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17) 이러한 문제 역시 자금계산서 중심으로 대차대조표가 작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표 III-4〉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유동자산)

1. 자산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1100					
유동자산			○	○	
	1110		○	○	
	유동자금		○	○	
		1111	○	○	지금 출납부서에서 관리·보관하는 현금[일반 업무부서의 소액 현금 전도액(前渡額)을 포함한다]
		현 금			
		1112	○	○	금융회사에 예치된 각종 예금
		예 금			
	1120		○	○	
	기타유동자산		○	○	
		1121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다른 회계 조직 등에 대한 일시적 대여금
		단기 대여금			
		1122	○	○	물품 및 용역 구입비용 등의 선지급액
		선급금			
		1123	○	○	일반적인 거래의 미수채권
		미수금			
		1124	○	○	액수나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비용의 선지급액(소액현금은 1111 현금에 계상한다)
		가지급금			
		1125	○	○	예금이자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세액 중 차후 환급이 되는 법인세
		선급 법인세			
		1126	○	○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받을어음			
		1129	○	○	회수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그 밖의 유동자산
		기타 유동자산			

출처: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 라) 대차대조표 쟁점사항 4: 투자유가증권과 출자금

투자유가증권은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및 국공채로 구성되고 출자금은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외의 투자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또한 투자목적 대상인 투자유가증권의 만기 및 보유목적에 따라 기타유동자산과 투자와기타자산에 각각 분류될 수 있다. 투자유가증권(유가증권 포함)은 시가로 평가(상장주식은 거래소 종가, 비상장주식 매입분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되고, 시장성이 없는 기부받은 유가증권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은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sup>18)</sup>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은 <표 Ⅲ-5>와 같다.

<표 Ⅲ-5>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

증권구분	시가평가 방법
시장성 있는 주식	상장유가증권 거래소의 종가
비시장성 주식	직접 매입분: 「상증법」 제63조 1항1호 기준평가 기부 받은 유가증권 : 평가하지 않음
수익증권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국공채	채권평가기관이 공시한 평가금액
회사채	채권평가기관이 공시한 평가금액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 199.

시장성이 있는 증권인 경우, 거래소의 종가를 확인해서 평가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다. 그러나 직접 매입한 시장성 없는 증권인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받은 증권인 경우, 시장성이 있으면 평가대상에 포함되나 시장성이 없는 증권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한 증권과 기부받은 증권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근거는 있겠으나,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장성 없는 기부받은 증권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학교의 자산이므로, 학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18)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 199.

그런데 시장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렵게 산출된 정보가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필요가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역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사립학교가 투자한 기업의 증권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투자한 기업의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정보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가 보유한 투자증권 대상 기업의 순자산/당기순이익/지분율 등을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 및 정보작성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sup>19)</sup> 다음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주요 지적 사례이다.

19) 예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석에 보고되는 투자증권 보고 형식이다.

구분		피투자회사명 또는 발행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공정가액
일반 회계	출자금	공사	XX공사	80%		없음
			YY공사	49%		없음
		공단	XX공단	95%		없음
			YY공단	100%		없음
		기타	XX	100%		없음
			YY	100%		없음
	투자주식	XX(주)	15%		XXX	
		YY(주)	5%		없음	
	투자채권	국민주택채권	없음		없음	
	소계					

※ 공정가액은 시장성 있는 주식(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한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출자금 및 투자주식 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구분			지분율	피투자기관 재무상태			피투자기관 경영성과		
				총자산	총부채	자기 자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 순이익
출자금	공사	XX공사	100%						
		YY공사	51%						
	공단	XX공단	100%						
		YY공단	100%						
	기타	XX	100%						
		YY	100%						
투자 주식		XX(주)	25%						
		YY(주)	10%						

**【사례】 투자유가증권 평가 미수행**

학교는 보유중인 채권상품(국공채) 등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함

☞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회계연도 말 시가평가를 수행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효과를 대차대조표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기본금 조정)에 반영하여야 함

**【사례】 유가증권 운용 기금의 기말 평가 미수행**

학교는 유가증권 중 채권 등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임의장학기금 등을 시가 평가하지 않고 투자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투자자산은 회계연도말 시가 평가를 수행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효과를 대차대조표의 기본금(기본금 조정)의 기금평가손익 계정에 반영하여야 함

**【사례】 유가증권 운용 기금 평가 오류**

학교는 임의기금 중에서 회계연도 말 시가평가시 회계연도말이 아닌 전날의 거래소 종가를 적용하여 임의건축기금과 기금평가손익이 각각 3,250천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음

☞ 시장성 있는 주식의 시가평가는 회계연도 말 해당 주식의 종가를 사용하여야 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223, p.226

**3)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재무보고서이다. 「특례규칙」 제27조는 회계연도 내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중 하나인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III-6>은 특례규칙 <별지 5호>의 사학기관 운영계산서이다.

운영계산서를 살펴보면, 흔히 기업회계기준에서 중요한 핵심 지표 중 하나인 당기순이익(손실)과 성격이 유사한 항목으로 보이는 것은 당기운영차액이다. 그러나 하단에 작성방법에 따르면 단순히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의 기능 이외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즉, 운영계산서는 자금계산서의 계획에 따라 집행된 적립금 대체와 인출이 포함되어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성과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발생시킨다. 흔히 운영계산서가 사기

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일반 기업회계에 익숙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생소하다.

사립학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달라 각 항목별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운영계산서의 기본 기능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당기의 운영수익과 운영비용 이에 대한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자산의 평가 등 평가손익(즉, 비경상적)을 구분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표 III-6〉 사학기관 운영계산서

## 운 영 계 산 서

[ 당기: . . . 부터 . . . 까지  
전기: . . . 부터 . . . 까지 ]

1. 운영수익

(단위: 원)

과 목		① 당 기		② 전 기	
관·항	목	금 액		금 액	
		목	관·항	목	관·항
③ 운영수익 총계					

2. 운영비용

(단위: 원)

구분	과 목			① 당 기		② 전 기	
	관	항	목	목	관·항	목	관·항
운영비용							
	④ 운영비용 합계						
기본금 대체액	⑤ 제적립금대체액						
	⑥ 운영차액대체액						
⑦ 당기운영차액							
비 용 총 계							

1. ①란은 당해연도 결산액이며 ②란은 전년도 결산액을 적습니다.
2. ⑤란 및 ⑥란은 기금적립액 및 기금인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⑦란의 당기운영차액은 ③란의 운영수익 총계에서 ④란의 운영비용 합계액과 ⑤란의 제적립금대체액을 빼고, ⑥란의 운영차액대체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출처: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5.

#### 4) 합산재무제표 및 종합재무제표

합산재무제표는 법인일반 업무회계와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를 합한 것으로 반드시 작성하여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외는 별도로 종합재무제표는 합산재무제표 이외에 추가로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회계 중 부속병원회계를 포함하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특례규칙」 제42조에서도 합산재무제표의 제출만 규정하고 있다.

##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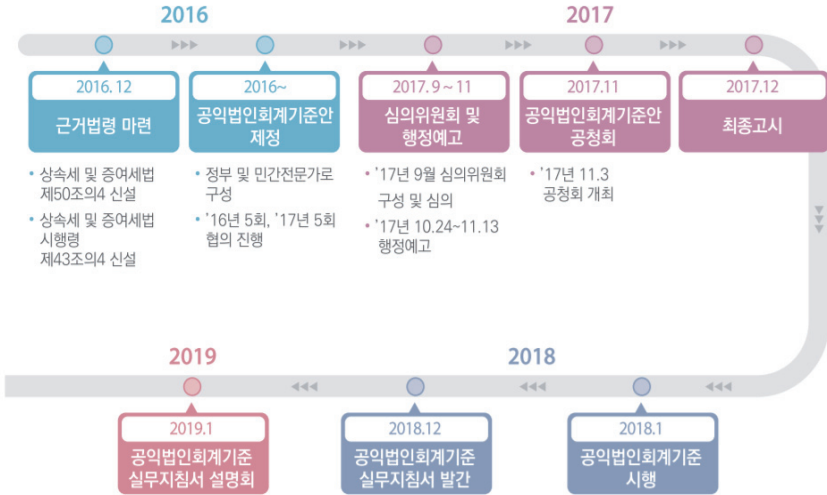
### 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분석

#### 1)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과정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 의무는 있으나 관련 회계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공통된 회계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익법인 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익법인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6. 12.: 「상증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및 「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4를 신설
- 2017. 11.: 공익법인회계기준안 공청회
- 2017. 12.: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종 고시
- 2018. 1. 1.: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 2018. 12.: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발간
- 2020. 5.: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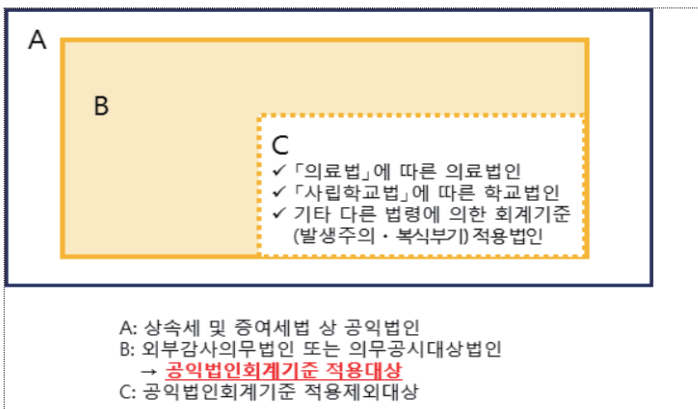
[그림 III-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경과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2020, p. 9.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으로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은 제외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



출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2018, p. 18.

공익법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이용자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공익목적사업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공익법인은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와 한 회계연도 동안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운영성과표로 구성되며, 주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2018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는데, 공익법인의 기준 적용을 돕기 위해 2018년 12월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가 발간되었으며, 2020년 5월에는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발간되었다.

## 2)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sup>20)</sup>

### 가) 일반적인 목적의 재무보고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공익법인이 적용하는 회계와 관련하여 「공익법인법」과 시행령 및 「상증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상태였다. 비영리조직에서는 영리기업의 '이익'과 비교할 만한 단일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익 외의 다른 성과지표가 요구되었다. 이에 공익법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통일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공익법인이 제공하는 공익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부자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제공 여부에 관한

20)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2018)를 일부 요약하여 제시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내부관리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회계 시스템은 내부관리자에게 공익법인의 지속가능한 사업수행능력과 공익목적 사업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공익법인의 재무상태인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및 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나)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지금까지 다수의 공익법인은 <표 Ⅲ-7>과 같이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다.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세무신고의 목적 등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표 Ⅲ-7> 주요 구분회계 현황

구 분		관련 법규	규정 내용
설립근거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6조	- 법인회계 - 시설회계 - 수익사업회계
	학교	「사립학교법」 제29조	- 법인회계 - 학교회계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제3조	- 법인회계 - 병원회계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 수익사업 - 비수익사업

출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2018.

단일실체의 종합적인 재무보고가 아닌 사업부별 재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만 제공하고 있어 법인 전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는 관리목적으로 효율적인 반면, 일

반 재무보고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내부적으로는 공익법인의 회계단위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공익법인별로 회계단위를 상이하게 구분한 재무제표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조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회계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목적이 아닌 일반 재무보고목적하에서는 회계단위를 구분하지 않은 통합된 보고실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공익법인 전체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목적적합한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 영리기업에서는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단위를 구분한 부문별 정보는 병행하여 보고하되, 상세내역은 주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법인을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익법인 재무제표를 다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10조제2항, 제23조제2항). 공익법인의 특성상 공익목적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수익이나 보조금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부자나 감독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간의 자산 이전, 기타사업을 통한 자원마련 파악 등 공익법인의 자금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공익목적사업 구분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은 공익법인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공익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활동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야 하며, 이때 각 사업활동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표 III-8〉 재무제표 작성단위 및 구분회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통합	공익목적	기타	통합	공익목적	기타
자산	자산	자산	사업수익 (자산비용 사업이익)	사업수익 (자산비용 사업이익)	사업수익 (자산비용 사업이익)
부채	부채	부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과액 법인세환급액당기운영이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과액 법인세환급액당기운영이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과액 법인세환급액당기운영이익)
순자산	순자산	순자산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

출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설서』, 2018, p. 125.

####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반의 재무보고

2018년 이전까지 공익법인은 현금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단식부기 방식으로 결산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사용상의 편리함으로 인해 단식부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하였다. 현금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단식부기 방식은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현금자산의 증감 내역만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형자산 매매 등으로 인해 법인의 손익이 왜곡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손익 산출과 그 증감 원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검증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가 빈번해질 경우 공익법인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지 않는 등 재무상태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외상매입금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않았

지만 경제적 효익의 유출입이 예상되는 거래의 경우 현금주의 회계원칙에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반면,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공익법인의 과거의 성과평가와 미래의 성과예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복식부기 방식은 재무상태 또는 재무성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함에 따라 차변과 대변이 균형(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같은 값)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는 자기검증을 가능하게 하여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또한 손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라)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종류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된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5조).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필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와 상이하다. 공익법인은 운영성과표를 사용하여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대신한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익목적사업의 활동 내역을 사업수행비용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는 운영성과표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손익계산서에 비해 적합하다. 재무제표 구성항목 중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된다. 공익법인의 순자산은 주주 간의 거래가 없어 일반기업에 비해 단순하여, 순자산에 대한 변동내역을 필수 재무제표가 아닌,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공익법인은 수지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비용과 노력을 경감하고자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 마) 공익법인의 특수성 반영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제6조). 따라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양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식, 순자산의 구분, 수익·비용의 인식과 분류, 자산·부채의 평가 및 주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다수의 공익법인은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기에, 실무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기업들이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많은 전환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인 공익법인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현행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중소기업 회계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체제로 중소기업 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공익법인 중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발생주의·복식부기)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교육기관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특례규칙을 적용하며,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는 공익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성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기본원리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총 5개의 장과 43개의 조문, 부칙과 별지 서식으로 구성된다.

〈표 III -9〉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성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3조(보고실체)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제5조(재무제표)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12조(유동자산)
	제13조(투자자산)
	제14조(유형자산)
	제15조(무형자산)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제17조(유동부채)
	제18조(비유동부채)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20조(기본순자산)
	제21조(보통순자산)
	제22조(순자산조정)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제25조(사업수익)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제27조(사업비용)
	제28조(사업외수익)
	제29조(사업외비용)
	제30조(공동수익 및 비용의 배분)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제32조(법인세비용)

〈표 III-9〉의 계속

구 분	내 용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제5장 주식	제40조(주식의 정의)
	제41조(필수적 주식기재사항)
	제42조(선택적 주식기재사항)
	제43조(주식기재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출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설서』, 2018.

## 나. 주요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사립대학에 적용하는 특례규칙은 재무회계규칙이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시행되었으며, 사립대학의 예산편성·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례규칙은 의사결정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일반 재무보고 목적 외에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사학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재무보고 성격도 가지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익법인의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적용대상은 상이하나, 두 기준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일반 재무보고 목적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일반 재무보고 목적하에 상이한 두 기준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III-10〉 특례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

구 분	특례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목적	○ 이 규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 제시
법적근거	○ 「사립학교법」 제3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적용대상	○ 사립대학교 그 학교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
적용제외	-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법령에 따른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고,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출처: 저자 작성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도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개별법에서 회계기준을 규정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1) 재무제표 작성원칙 및 구성요소

첫째,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은 특례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 모두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복식부기란 경제의 일반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즉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계상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는 가장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록하고 집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의 회계는 영리기업에서와 같은 기간손익계산보다는 수입과 지출이 중요시되어 발생주의 회계원칙보다는 현금주의 회계 또는 수정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다. 특례규칙 내에는 발생주의라는 표현이 없으며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그리고 선수수익 등 발생주의 회계의 계정과목 또한 특례규칙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항목이 과대(소) 계상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는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설립목적이 상이하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작성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구 분	특례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작성원칙	<p>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li> <li>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li> <li>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li> <li>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li> </ol>	<p>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p> <p>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 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p>
재무제표 구성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금계산서</li> <li>2. 대차대조표</li> <li>3. 운영계산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무상태표</li> <li>2. 운영성과표</li> <li>3. 주석</li> </ol>

출처: 저자 작성

둘째, 특례규칙은 자금계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와 운영계산서가 작성된다.<sup>21)</sup> 즉, 모든 자금 수입과 지출은 자금계산서에 보고되고, 이들 거래의 결과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의 증감을 가져오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며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거래는 운영계산서에 보고된다. 자금계산서를 기업회계기준의 현금흐름표와 유사하다고 하지만, 보고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금계산서는 설정된 예산과 실제 지출된 자금을 비교하여 예산 집행 여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이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의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작성된 재무정보의 정보제공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기업의 활동별 현금유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이다. 자금계산서의 자기에 대한 정의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자기의 정의와 같지 않다.

특례규칙(교비회계)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
자금 = 유동자산 - 유동부채(단기차입금제외)	자금 = 현금 및 현금등가물

셋째, 특례규칙의 대차대조표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상태표는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지만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에서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규칙에 주기와 주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주기 및 주석항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특례규칙에서 작성되어야 할 부속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특례규칙 제40조(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등)  
 ① 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21) 경영 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성하는 자금계산서가 재무제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대학회계법」에서는 예산 관련 세입과 세출을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1. 별지 제4의1호서식(가)에 의한 현금및예금명세서
2. 별지 제4의1호서식(나)에 의한 수표수불명세서
3. 별지 제4의2호서식에 의한 선금금명세서
4. 별지 제4의3호서식에 의한 가지금명세서
5. 별지 제4의4호서식에 의한 선급법인세명세서
6. 별지 제4의5호서식에 의한 받을어음명세서
7. 별지 제4의6호서식(가)에 의한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8. 별지 제4의6호서식(나)에 의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 8의2. 별지 제4호의7서식(3)에 따른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9. 별지 제4의7호 서식(가)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 9의2. 별지 제4의7호 서식(나)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4의8호서식에 의한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11. 별지 제4의9호서식에 의한 미지급금명세서
12. 별지 제4의10호서식에 의한 가수금명세서
13. 별지 제4의11호서식(가)에 의한 지급어음명세서
14. 별지 제4의11호서식(나)에 의한 어음수불명세서
15. 별지 제4의12호서식에 의한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16. 별지 제4의13호서식에 의한 학교채명세서
17. 별지 제4의14호 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 17의2. 별지 제4호의16서식에 따른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 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의4호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2. 별지 제5의1호서식에 의한 전입금명세서
3. 별지 제5의2호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액명세서
4. 별지 제5의3호 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출처: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0조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주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1조에서 15개의 필수적 주석기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모든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출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1조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필수적 주석기재 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2) 대차대조표 작성 목적 및 작성단위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사립학교 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특례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 모두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특례규칙에 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회계의 경우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구분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회계

의 재무상태 및 운영실적과 그가 운영하는 학교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다. 특히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회계의 재원이 다른 회계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대학의 설립목적인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례규칙은 학교법인과 구분 관리되는 회계단위를 합산하여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합산재무제표란 학교법인의 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를 합산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합산재무제표의 구성 역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로 이루어진다. 종합재무제표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모든 회계를 합한 재무제표를 의미하며 합산재무제표에 부속병원회계 그리고 법인수익사업회계가 추가적으로 합산된 형태이다.

구 분	특례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작성 목적 및 작성단위 (구분회계)	제3절 대차대조표 제22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대차대조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②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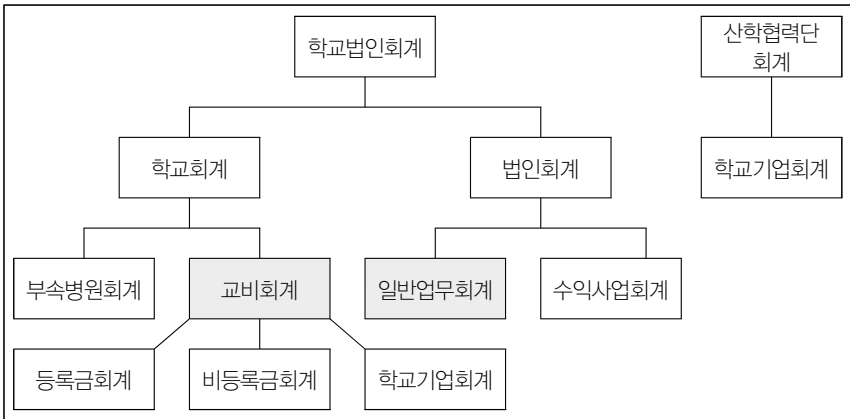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이렇듯 학교법인회계는 회계실체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후추 합산하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공익법인은 하나의 재무상태표에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는 구조이다. 때문에 합산/종합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없이,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한다.

학교법인회계 중 교비회계와 일반업무회계는 특례규칙을 적용받는 반면, 부속병원회계는 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 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 III-3]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회계구분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 3) 대차대조표 작성방법(작성기준)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인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때문에 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에 정의와 인식요건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규칙에는 이들에 대한 정의와 회계처리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결산 유의사항과 해설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결산 유의사항과 해설서는 특례규칙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기업회계기준의 정의와 회계처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특례규칙은 자산과 부채의 분류기준을 간단하게 정의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표 2에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실무자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고, 이와 관련된 지적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 분	특례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p>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 (작성 기준)</p>	<p>제24조(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투자 및 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적립금·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p> <p>②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p> <p>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li> <li>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li> <li>3. '순자산'이란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li> </ol> <p>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공익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li> <li>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li> </ol> <p>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li> <li>2.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li> <li>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li> </ol> <p>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p> <p>⑥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p> <p>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p> <p>②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p> <p>③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p> <p>제13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p> <p>② 투자자산에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p> <p>(이하 생략)</p>

출처: 저자 작성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계정으로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가장 잘 반영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이 불가능한 항목이다. 그러나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9조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채계정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례규칙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세무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교육부 결산지침(2003)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용)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회계감사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결산회계처리에 관해 부채의 요건 미충족(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할 자금으로 법인 내부에 유보시키는 것), 운영비용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감사인과의 이견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1년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법인세법」상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허용되고 2003년 교육부 결산지침에서도 외부감사대상인 학교법인에 한해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sup>22)</sup>

다만, 외부감사를 받는 학교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방식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산조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손금계상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둘째, 특례규칙상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거 교육부 결산지침에 「법인세법」에 따른 결산

22) 사립대학의 하부조직 성격인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는 비유동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규정하고 있음.

조정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에서 운영계산서상의 운영차익에 대한 재무정보 유용성이 크지 않아 비용계상으로 인한 손익왜곡 현상의 중요성이 작은 점으로 비추어 결산조정을 선택하고 있다.

구 분	특례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 가능</li> <li>○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표시</li> </ul>

출처: 저자 작성

### 5) 기본금(순자산)의 분류

「특례규칙」 제3조(정의)에 따르면 기본금이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 또는 운용되는 기본적인 자산의 가액이다. 이 정의에서 특례규칙도 기본금을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하게 잔여지분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본금은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 및 수익활동이 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된 후 부수적으로 결정된다.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원금보존적립금, 임의적립금, 기본금조정 그리고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연기본금 중 설립자기본금은 설립자가 설립 시 출연한 출연재산과 설립 이후 출연한 출연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립대학교의 법인기본금은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의 현금 포함)이며, 이러한 계정과목의 성격은 기업회계의 납입자본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출연기본금 계정을 통해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법인기본금 계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학교에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출연한 금액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에 대한 적립계정으로 자본항목에 동 기금의 적립 여부를 표기하기 위한 계정과목이다. 특례규칙의 적립금은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기금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운영차액은 전기이월운영차액과 당기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과 대응되는 성격을 가진다.

운영차액	=	전기이월운영차액	+	당기운영차액
------	---	----------	---	--------

전기이월운영차액은 대차대조표에 비교 표시된 회계연도의 운영차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기운영차액은 운영계산서의 당기운영차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계산서항목인 당기운영차액과 전기이월운영차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례규칙에 운영차액계산서라는 별도의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이렇게 구분 표기하여 이월잔액 및 재무제표 간의 검증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순자산은 특례규칙의 기본금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그 구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순자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구 분	특례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순자산의 분류	기본금 1. 출연기본금 2. 원금보전적립금/임의적립금 3. 기본금조정 4. 운영차액	순자산 1. 기본순자산 2. 보통순자산 (적립금/잉여금) 3. 순자산조정

출처: 저자 작성

### 가)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말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설립등기 전 기관과 같이 주무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은 기본순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전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순자산을 구분하

고 있다.<sup>23)</sup>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기본순자산은 자본금, 출연기본금, 기본재산, 사용제한 순자산,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등 기존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이 해당된다. 기본순자산은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재정적 기초가 되며, 임의로 사용변경 및 처분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는다. 다만 주무관청 등의 허가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가 보통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보통순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입하면 별도의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 나)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은 법인의 운영활동,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의미하며 적립금과 그 외의 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적립금은 정관 등에 의하여 사업의 확장이나 시설투자 등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준비금 및 임의적립금 등이다.

#### 다) 순자산조정

순자산의 가감 성격항목을 순자산조정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 중 일부 미실현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순자산 항목인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미실현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있으며 미래에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순자산조정항목은 특례규칙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에 대한 변동효과를 반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례규칙은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회계연도 말 시가 평가를 수행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23) 사회복지법인 중 일부는 영리법인의 자본항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학술·장학재단 중 일부는 영리법인의 자본항목과 순자산의 개념을 혼용하여 순자산을 표시함. 또한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용어는 상이하지만 공익법인의 순자산 개념을 사용하여 순자산을 구분하는 단체들도 있음.

효과를 대차대조표의 기본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규칙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11년에 배포한 「특례규칙개정에 따른 사립대학 결산유의사항(2011.1.9.)」에 따르면 법인 및 대학교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성격에 따라 시가평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의 시가평가로 인한 취득원가와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대차대조표에는 기본금 조정(기본금항목)으로 표시한다. 이는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목적이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목적이기 때문에 미실현보유손익을 기본금항목으로 처리하여 미실현손익의 운영손익 반영으로 운영성과가 왜곡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 6)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재무보고서이다. 「특례규칙」 제27조는 회계연도 내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수익의 수익인식기준과 운영비용의 비용인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에 운영계산서와 유사한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공한다. 하지만, 특례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는 발생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복식부기를 도입한 일반적인 회계제도에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같이 도입하나 특례규칙 내에는 발생주의라는 표현이 없으며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그리고 선수수익 등 발생주의 회계의 계정과목 또한 특례규칙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발생주의원칙, 수익·비용대응원칙, 총액인식을 기본으로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부분과 기타사업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례규칙의 운영계산서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 가) 구분표시

운영계산서는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운영수익항목은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의 특성에 따라 주 수입원인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그리고 교육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운영비용항목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각종적립금대체액, 운영차액대체액 그리고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표기는 수익 및 비용의 재원을 구분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수익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특례규칙」 제3조에 따르면 운영수익이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의 증가를 말하고, 운영비용이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그리고 자금계산서가 총액주의에 따라 작성되도록 특례규칙이 규정하는 한 운영계산서도 당연히 총액주의를 작성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운영비용

특례규칙상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 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기본금대체액은 당해 회계연도중의 기금적립과 같이 기금의 증가분에 대응한 제적립금대체액으로 표시하고 운영차액대체는 기금인출과 같이 기금의 감소분을 대응하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당기운영차액이란 별도의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총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이다. 특례규칙상 운영비용의 구성요소는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 각종적립금대체액, 운영차액대체액 그리고 당기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차액대체액을 운영비용구성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운영비용총계	=	운영비용	+	각종적립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액	+	당기운영차액
--------	---	------	---	----------	---	---------	---	--------

### 다) 기본금대체와 운영차액대체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처럼 순수하게 학교법인 및 교비회계의 1년 동안의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운영이익(특례규칙에서 설명이 없는 개념)은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수치이다. 운영계산서상의 당기운영차액이란 운영이익과는 다른 개념으로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특례규칙의 기금적립 시 추가적인 회계처리인 기본금대체에서 비롯된다. 기본금대체 회계처리는 현금주의회계를 복식부기 형태로 전환·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독특한 자금유출을 운영계산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특례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정자산취득과 관련된 기본금대체 계정과목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졌고 현재는 기금적립에 관련된 제적립금대체액만 존재하게 되었다. 제적립금대체액(기본금대체액)과 운영차액대체액은 기금의 적립 및 인출과 연동하여 발생하는 계정과목이다.

구 분	특례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사업비용 (영업비용)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실체별 관, 항, 목을 기준으로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기본금대체액으로 구분하여 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표시</li> <li>공익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표시</li> </ul>

출처: 저자 작성

반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성과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III-11〉 공익법인 운영성과표 구조

운 영 성 과 표	
과 목	설 명
사업수익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이 있음
(-) 사업비용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이 있음

〈표 III-11〉의 계속

운 영 성 과 표	
과 목	설 명
= 사업이익(손실)	
(+) 사업외수익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있음
(-) 사업외비용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등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의미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의미함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인세비용 또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른 법인세비용
= 당기운영이익(손실)	

주: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출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설서』, 2018

### 7) 수익인식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의 제1항 제1호에는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수험료를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례규칙에서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등록금수입과 수강료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록금수입은 학부입학금, 대학원입학금, 학부수업료 및 대학원수업료로 구성되며, 수강료수입은 단기수강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립대학은 타 회계실체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을 기록하는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 그리고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이외의 사업으로 나뉜다.

공익목적사업부문의 경우,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으로 구성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주된 자원인 기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 인식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8)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 요약

사학기관의 회계처리와 작성은 특례규칙을 따르고 있는바, 특례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2〉 공익법인회계기준과 특례규칙의 비교 요약<sup>24)</sup>

공익법인회계기준	특례규칙
<b>[총 칙]</b>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등) ① 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③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24)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문을 기준으로 특례규칙을 비교 설명함.

〈표 III-12〉의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특례규칙
제3조(보고실체)	보고실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없음 - 다만, 제36조에서는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1조 결산부속서류에는 합산재무제표만을 포함하고 제42조에서는 합산재무제표만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로 명시하고 있음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제15조(회계원칙) 복식부기원리만 제시 - 발생주의 개념 부재
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제16조(재무제표)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구성되어 있음. 주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음 - 이와는 별도로 제40조(부속명세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규정된 부속명세서 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특례규칙 해설서에 특례규칙의 일부 사항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예,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등)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특례규칙은 중요성에 따라 전기 오류를 전기 이월운영차액에서 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기 운영차액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표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음. 이에 특례규칙 해설서 등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관련 조항은 없으며, 특례규칙 해설서 등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사립대학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정과목 등을 엄격하게 제시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조항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별지서식의 작성방법 등에서 비교식으로 제시됨. 그러나 자금계산서는 당해연도만 보고하는 형태임

〈표 III-12〉의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특례규칙
<b>[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b>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대차대조표의 목적과 작성단위에 대한 조항은 없으나, 이와 관련된 설명은 특례규칙 해설서에 기술되어 있음 - 제22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24조(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에 대차대조표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 자산 및 부채 등 기초적인 정의는 없음 - 대부분 특례규칙 해설서 및 교육부 결산지침 등에서 관련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음
제12조(유동자산)	
제13조(투자자산)	
제14조(유형자산)	
제15조(무형자산)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제17조(유동부채)	
제18조(비유동부채)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규칙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무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교육부 결산지침 등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용)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반영
제20조(기본순자산)	개별 규칙으로 나열되지 않음. 제24조(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투자및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적립금·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21조(보통순자산)	
제22조(순자산조정)	
<b>[운영성과표/운영계산서]</b>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운영계산서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은 없으며, 작성과 관련해서는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와 특례규칙 해설서 및 교육부 결산지침을 이용하고 있음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제25조(사업수익)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제27조(사업비용)	
제28조(사업외수익)	

〈표 III-12〉의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특례규칙
제29조(사업외비용)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특례규칙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무 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교육부 결산지침 등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용)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반영
제32조(법인세비용)	조항 없음
<b>[자산·부채의 평가]</b>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특례규칙 제5절 자산의 평가에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음. 작성과 관련해서는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와 특례규칙 해설서 및 교육부 결산지침을 이용하고 있음 -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 인원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퇴직금 부담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칙에서는 이런 인원들에 대한 퇴직금부담 규모를 나타내는 계정과목과 총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b>[주 석]</b>	
제40조(주석의 정의)	주석에 대한 특별한 조항 없음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제43조(주석기재방법)	

출처: 저자 작성

공익법인회계기준에는 없으나 특례규칙에 있는 조항은 예산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표 III-13〉 공익법인회계기준에는 없으나 특례규칙에 있는 조항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 특례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제2장 예산	제4조 예산편성요령 ~ 제14조 예산편성의 예외	· 예산편성 및 보고 일정 ·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 예산의 구성요소 · 예산편성 부속서류 · 예산의 집행 지침

출처: 저자 작성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해당 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별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면, 특례규칙은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례규칙은 사립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적용을 위해 제정된 회계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에 대한 조항이 제2장 제4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열거되어 있다. 이외에도 자금계산서에 대한 규칙, 그리고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에 대해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다.

###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 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학교법인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저하

특례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자금계산서

특례규칙의 회계처리는 현금주의회계로 작성된 자금계산서상의 자금집행으로 시작된다. 자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결산과정을 거쳐 대차대조표와

운영계산서가 산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명확하게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계산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공익법인의 예/결산이 중요한 사항이나 재무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예/결산 즉, 세입/세출결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운영성과를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자 함이다. 즉, 예산의 통제 및 효율성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부자 및 정부 등이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제공 여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대차대조표

특례규칙의 대차대조표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상태표는 법인의 재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유동자산의 자금을 대한 정의이다. 특례규칙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의 유동자금은 현금 및 예금<sup>25)</sup>을 의미하며, 자금계산서의 작성기준에 의한 자금의 개념은 예산항목(단기차입금)을 제외한 운전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유동자산-유동부채). 이러한 자금의 개념은 실제 학교법인 및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와 부합한다.

둘째, 유동과 비유동자산의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계정과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례규칙의 (관)유동자산/(항)기타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금융채 등을 유동자산의 예금계

25) 「특례규칙」 제3조 ‘정의’에서 자금의 정의는 현금·예금·수표 및 우편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례규칙의 이러한 자금의 정의는 대차대조표의 유동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특례규칙」 제3조의 자금의 정의는 「특례규칙」 제21조의 자금계산서상 이월자금의 자금과는 다른 개념임.

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교법인이 이월금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신탁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관)투자외 기타자산의 (항)기타자산의 (목)수익용예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예금이외 학교법인의 만기 1년 이상 예금 등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에 대해서는 특례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다.

셋째, 특례규칙의 투자외 기타자산은 학교법인이 설치 및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지출한 토지 및 건축물을 나타내는 설치학교,<sup>26)</sup> 장기적인 투자수익 등의 부수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유·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자산과 향후 특정목적의 용도를 지정하여 기금을 조성한 금액을 나타내는 원금보존기금 및 임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법인의 경우, 다른 공익법인과는 달리 설치학교, 원금보존기금, 임의기금 계정이 있다. 대학교 등의 설치학교는 각 설치학교(대학교회계 등)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업무회계의 투자액(토지·건축물)을 의미하며, 교비회계의 법인기본금 계정인 출연기본금과 적립금과 대응되는 항목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는 이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계정은 없다.

넷째, 특례규칙은 기금<sup>27)</sup>과 고정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각각 출연기본금과 제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차변의 기금과 고정자산을 대변의 출연기본금과 제적립금과 대응시킨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즉 교비회계의 경우에는 특정기금 = 제적립금(재평가적립금은 제외), 고정자산금액 = 법인 + 기타기본금 등식이 성립되도록 하고, 법인회계의 경우 설치학교 + 토지·건물·구축물 + 기타고정자산 = 출연기본금, 특정기금 = 적립금 등식이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26) 특례규칙상 설치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실체의 성격에 따라 대학교, 전문대학교, 원격대학교, 초·중·고교 그리고 부속병원으로 구성됨.

27) 기금 계정과목은 향후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한 기금을 회계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례규칙상 기금이란 법인 및 대학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향후 특정한 목적(연구, 장학, 건축, 퇴직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적립한 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기금은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별 기금의 형태로 적립되어야 하며 향후 해당 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됨.

〈표 III-14〉 특례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대차대조표(관/항으로 표시)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무상태표<sup>28)</sup>

대 차 대 조 표		재 무 상 태 표	
(당기 : . . . 현재) (전기 : . . . 현재)	[자 산]	[부 채 및 순자산]	[부 채 및 순자산]
<b>자 산</b> I. 유동자산 1. 유동자금 2. 기타유동자산 II. 투자와 기타자산 1. 설치학교 2. 투자자산 3. 기타자산 4. 원금보존기금 5. 임의기금 III. 고정자산	<b>부 채</b> I.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2. 예수금 3. 선수금 4. 기타유동부채 II.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기본금 I. 출연기본금 II. 적립금 (원금보존, 임의) III. 기본금조정 IV. 운영차액	I.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2. 예수금 3. 선수금 4. 기타유동부채 II.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I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 채 총 계 순자산 I. 기본순자산 II. 보통순자산 적립금, 잉여금 III. 순자산조정	I.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2. 예수금 3. 선수금 4. 기타유동부채 II.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I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 채 총 계 순자산 I. 기본순자산 II. 보통순자산 적립금, 잉여금 III. 순자산조정
자산총계 출처: 저자 작성	자산총계	자산총계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8)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상태표는 운영성과표와 동일하게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경우, 특정기금에 대한 분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목의 중요성 관점에 따라 별도의 항목으로 재무제표 본문에 보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예를 들면, 장기금융상품 혹은 임의기금 계정 그대로 사용 가능). 그러나 기금과 대응되는 기본금 계정은 조금 다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순자산은 크게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 3) 운영계산서

사학기관의 운영계산서는 일반 영리기업처럼 성과지표인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또한 정보이용자 역시 공익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을 달리하지 않는다. 사학기관의 경우, 한 회계기간 동안 교육활동 등에 조달된 자원과 사용된 자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례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된 운영계산서는 감독기관이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편성에서 고려되지 않은 발생주의 항목들이 다수 누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학교법인 등의 구분회계를 기본 바탕으로 각 회계실체 간 전출금, 적립금 대체액 등의 항목이 운영계산서에 보고됨으로써 일반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항목은 운영비용의 성격에는 부합되지 않기에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운영차액이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특례규칙에서 나열된 수익과 비용 기준보다는 본래의 성격, 즉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부합되는 항목만을 운영계산서에 나타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대차대조표와의 연계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기능별로 비용을 보고하는 운영성과표에 추가하여 성격별로 구분한 비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

〈표 III-15〉 특례규칙 별지 제5호에 따른 운영계산서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성과표

운영계산서

[ 당기: . . . 부터 . . . 까지  
전기: . . . 부터 . . . 까지 ]

1. 운영수익 (단위: 원)

과목	① 당기		② 전기	
	금액	목	금액	목
관·항		관·항		관·항
③ 운영수익 총계				

2. 운영비용 (단위: 원)

구분	과목		① 당기		② 전기	
	항	목	금액	목	금액	목
운영비용	④ 운영비용 합계					
	기본금대채액	⑤ 제적립금대채액				
		⑥ 운영차액대채액				
⑦ 당기운영차액						
비용 총계						

- ①란은 당해연도 결산액이며 ②란은 전년도 결산액을 적습니다.
- ⑤란 및 ⑥란은 기금적립액 및 기금인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 ⑦란의 당기운영차액은 ③란의 운영수익 총계에서 ④란의 운영비용 합계액과 ⑤란의 제적립금대채액을 빼고, ⑥란의 운영차액대채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출처: 저자 작성

운영성과표

제X기 20X X년 X월 X일부터 20X X년 X월 X일까지  
제Z기 20X X년 X월 X일부터 20X X년 X월 X일까지

공익법인명 (단위: 원)

과목	당기		기타사업
	총합	공익목적사업	
사업수익	XXX	XXX	XXX
기부금수익	XXX	XXX	
보조금수익	XXX	XXX	
사업비용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	XXX	XXX	XXX
사업이익(손실)	XXX	XXX	XXX
사업외수익	XXX	XXX	XXX
유형자산상각차손환입	XXX	XXX	XXX
무형자산저평가이익	XXX	XXX	XXX
.....	XXX	XXX	XXX
사업외비용	XXX	XXX	XXX
기타의 대손상각비	XXX	XXX	XXX
유형자산상각차손	XXX	XXX	XXX
무형자산저평가손실	XXX	XXX	XXX
전기과목수정손실	XXX	XXX	XXX
.....	XXX	XXX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입액	XXX	XXX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XXX	XXX	XXX
법인채비용(관련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법인세비용	XXX	XXX	XXX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 4) 합산·종합재무제표

현행 특례규칙은 학교법인과 구분 관리되는 회계단위를 합산하여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합산재무제표란 학교법인의 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를 합산하여 하나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합산재무제표의 구성 역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로 이루어진다. 종합재무제표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모든 회계를 합한 재무제표를 의미하며 합산재무제표에 부속병원회계 그리고 법인수익사업회계가 추가적으로 합산된 형태이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종합적인 자금수지, 재무상태 및 운영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합산 및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재무보고의 목적에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작성된 정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합산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범위인 법인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의 적용회계기준이 동일하여 실무상 큰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작성되고 있으나 종합재무제표는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를 구성하는 일부 회계단위의 회계기준이 특례규칙과 상이하여 실무상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특례규칙」 제42조는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에 제출할 서류에 대해 학교법인 및 대학교 결산서(부속병원결산서) 외에 합산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종합재무제표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즉,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산출된 재무정보를 단순히 합산하여 보고하는 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작성하는 작성자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종합재무제표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하나의 재무상태표에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합산 및 종합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없이,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국세청 공시(공익법인회계기준 기반)양식 검토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으로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회계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공익법인 간 비교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고시되었다.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해당 근거법률에 따른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고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를 직접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9)</sup> 다만 소규모 공익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간편 서식으로 공시 가능하다. 또한 규모가 큰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에 대한 공시열람 시스템<sup>30)</sup>에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공시대상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별지 제31호 서식]</li><li>2.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li><li>3.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li><li>4.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1]</li><li>5.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2]</li><li>6.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3]</li><li>7.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4]</li><li>8.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5]</li></ol> |
|--|

29) 2019년까지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공익법인만 결산서류를 의무 공시하도록 되어 있었음.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이었음.

30)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제어장치로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익법인의 활동내용을 상시 감독함으로써 회계투명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sup>31)</sup>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인데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공시하고 있다. 관련 공시서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분야 기부금이 가장 많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공시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III-16〉 교육분야 기부금이 가장 많은 10개 학교법인

(단위: 원)

순위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총기부금품
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교육	91,765,553,739
2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교육	56,054,891,603
3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교육	49,665,878,754
4	학교법인 성광학원	교육	30,165,815,119
5	학교법인 선학학원	교육	27,706,935,219
6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교육	27,434,323,907
7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교육	25,823,528,565
8	학교법인 이화학당	교육	23,943,122,724
9	학교법인 한양학원	교육	23,762,325,357
10	학교법인 경희학원	교육	22,262,049,163

출처: <https://m.blog.naver.com/guidestar07/221779076891>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검색을 이용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보를 탐색하거나, 한국가이드스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1. 기본사항”에 대한 정보이다. 다음의 자료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2018 사업연도의 공시서류 중 1. 기본사항에 대한 것이다.

31) 별지 제31호 서식은 부록 2에 첨부되어 있음.

**1. 기본사항**

사업연도종료연월 : 2019년 02월

① 공익법인명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⑦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③ 대표자	김재호	④ 설립연월일	1964-04-25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⑥ 전화번호/팩스	02 32902002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vic2012@naver.com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V ]법정 [ ]지정 [ ]기타
⑪ 설립근거법	사립학교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V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교육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기업+개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V ]기타		
⑮ 이사 수	10 명	⑯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0 명
⑰ 고용직원 수	10,453 명		

기본사항은 공익법인명을 기본으로 설립유형 및 이사 및 자원봉사 연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을 운영하는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사의 수는 10명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무 공시 대상 서류 ‘6.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단순하게 이사의 수만 나열하는 정도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영역은 “2. 재무 및 3. 자산현황”에 대한 부분이다. 재무 및 자산현황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즉, 재무상태표의 요약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㉔ 총자산가액	㉕ 부채	㉖ 순자산			
			㉗ 소계	㉘ 기본순자산	㉙ 보통순자산	㉚ 순자산조정
㉓ 총계 (㉓=㉔+㉕)	2,705,596,278,215	847,932,287,813	1,857,663,990,402	720,423,677,473	1,139,593,959,960	-2,353,647,031
㉔ 공익목적사업	1,840,365,107,197	177,281,150,582	1,861,373,194,253	630,224,375,872	1,233,502,465,412	-2,353,647,031
㉕ 기타사업	865,231,171,018	670,651,137,231	-3,709,203,851	90,199,301,601	-93,908,505,452	0

**3. 자산현황**

(단위:원)

구분	㉑ 총자산가액	㉒ 토지	㉓ 건물	㉔ 주식및 출자지분	㉕ 금융자산	㉖ 기타자산
㉑ 총계 (㉑=㉒+㉓+㉔)	2,705,596,278,215	171,606,196,329	948,370,720,015	6,492,998,516	511,255,894,371	1,067,870,468,984
㉒ 공익목적사업	1,840,365,107,197	130,974,928,354	677,702,047,842	6,492,998,516	211,011,444,935	814,183,687,550
㉓ 기타사업	865,231,171,018	40,631,267,975	270,668,672,173	0	300,244,449,436	253,686,781,434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정관에 기재된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하고, 정관에 기재된 사업 이외의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 및 자산현황 역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되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검증할 방법은 없다. 외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도 관련 정보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익목적사업에 많은 회계실체를 보유한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해당 학교의 공익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보고서의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익목적사업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보고함으로써 개별 실체에 대한 사업수행비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2200	사업명	고려대학교 등	사업수행비용	567,247,914,246
사업내용	고려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사업지역	서울, 세종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0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0
사업내용				사업지역		

세 번째 영역은 “4. 수익현황과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이다. 수익현황은 공익법인 재원의 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크게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으로 구성되며, 구성된 항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4. 수익현황

(단위:원)

구분	㉓ 총계	㉔ 사업수익					㉕ 사업외수익	㉖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㉗ 소개	㉘ 기부금	㉙ 보조금	㉚ 회비수익	㉛ 기타		
㉜ 총계 (㉜=㉕+㉖)	1,812,162,430,505	1,690,930,578,239	91,765,553,739	55,366,327,426	0	1,543,798,697,074	120,838,645,288	393,206,978
㉗ 공익목적사업	641,601,135,204	557,831,348,164	91,765,553,739	55,366,327,426	0	410,699,466,999	83,769,787,040	0
㉘ 기타사업	1,170,561,295,301	1,133,099,230,075				1,133,099,230,075	37,068,858,248	393,206,978

5. 비용현황

(단위:원)

구분	㉜ 총계	㉝ 사업비용				㉞ 사업외비용 등 기타	㉟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㊱ 소개	㊲ 사업수행비용	㊳ 일반관리비용	㊴ 모금비용			
㉜ 총계 (㉜=㉝+㉞)	1,779,599,627,746	1,575,111,764,727	567,247,914,246	0	0	1,007,863,850,481	88,087,863,019	116,400,000,000
㉝ 공익목적사업	631,538,004,958	567,247,914,246	567,247,914,246	0	0	64,310,090,712	0	0
㉞ 기타사업	1,148,041,622,788	1,007,863,850,481				1,007,863,850,481	23,777,772,307	116,400,000,000

관련 금액은 운영성과표의 대분류 계정항목으로 운영성과표의 수익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요약된 정보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공익법인은 운영성과표의 항목 중 해당 항목을 보고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특례규칙으로 작성된 운영계산서를 바탕으로 공시 서류의 별지 제 1호 서식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치를 보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별도의 감독 및 감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성하여 제공된 정보에 대한 유용성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수익을 재원으로 사업목적 수행한다. 따라서 사업수익 중 공익목적사업수익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가 중요한 항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은 크게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으로 구분되어 공시된다. 이는 앞선 “4. 수익현황”에서 공시된 정보 중 기타사업을 제외한 공익목적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업수익의 기부금품을 개인 기부금품, 영리법인기부금품, 모금단체, 기타기부금품으로 구분하여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받은 것을 추가로 공시하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5. 비용현황”과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서도 나타난다.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1.사업수익	557,831,348,164	0
1)기부금품	91,765,553,739	0
(1)개인기부금품	32,603,859,587	0
(2)영리법인기부금품	14,332,011,271	0
(3)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42,283,181,001	0
(4)기타기부금품	2,546,501,880	0
기부금품 (1) ~ (4)에 포함된 기부금품	11,112,399,765	0
2) 보조금	55,366,327,426	0
3) 회비수익	0	0
4)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410,699,466,999	0
2. 사업외 수익	83,769,787,040	0
3. 고유목적사업의 준비금 환입액	0	0
4. 총합계(수익)	641,601,135,204	0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원)

구 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⑩ 사업외 손익
		사업손익				⑨ 기타	⑩ 사업외 손익			
		금융						부동산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⑨ 기타		
수 입	1,170,168,088,323	11,593,547,877	11,488,319,989	105,227,888	0	40,611,012,407	37,403,090,770	3,207,921,637	1,084,102,591,428	33,860,936,611
차 입	1,031,641,622,788	/	/	/	/	0	0	0	1,007,863,850,481	23,777,772,307
이익 (손 실)	138,526,465,535	11,593,547,877	11,488,319,989	105,227,888	0	40,611,012,407	37,403,090,770	3,207,921,637	76,238,740,947	10,083,164,304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이 대학의 비용구조와 상이하며, 별지의 운영성과표 역시 이를 추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분배비용에 금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고(별지 운영성과표에도 분배비용 0), 고려중앙학원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금액을 별지의 운영성과표에서 추정하기 어렵다. 특례규칙으로 작성된 운영계산서를 공시 양식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단위:원)

##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제기간)				전기
	당기				
	합계	사업	일반	모금	
1. 사업비용	567,247,914,246	567,247,914,246	0	0	0
(1)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35,649,357,341	135,649,357,341	0	0	0
1)국 내	135,649,357,341	135,649,357,341	0	0	0
2) 국외	0	0	0	0	0
(2) 인력비용	279,064,824,449	279,064,824,449	0	0	0
(3) 시설비용	67,675,069,167	67,675,069,167	0	0	0
(4) 기타비용	84,858,663,289	84,858,663,289	0	0	0
2.사업외 비용	64,310,090,712	0	64,310,090,712	0	0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0	0	0	0	0
4.총합계(비용)	631,558,004,958	567,247,914,246	64,310,090,712	0	0

##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12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가 작성되고 있다. 각 공익목적 수행하는 회계실체에 따라 지출 목적 및 수혜인원이 보고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개정 2019.3.20.)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10,900,000	10월	3,805,626,147	3,814,606,147	116,970,000
03월	3,791,760,825	3,790,450,825	12,210,000	11월	2,326,878,784	2,326,878,784	116,970,000
04월	2,638,125,034	2,636,935,034	13,400,000	12월	13,610,764,761	13,610,264,761	117,470,000
05월	11,400,929,321	11,389,999,321	24,330,000	01월	17,147,957,191	17,243,697,191	21,730,000
06월	5,061,432,281	5,060,765,281	24,997,000	02월	24,465,604,834	24,465,834,834	21,500,000
07월	1,988,353,602	1,988,380,602	24,970,000	합계	91,765,553,739	91,754,953,739	0
08월	3,074,550,208	3,067,570,208	31,950,000	차기이월			21,500,000
09월	2,453,570,751	2,359,570,751	125,950,000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원)

① (대표)지급처명 (성명/단체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지출목적	④ 수혜인원 (단체)수	⑤ 지출액		
				⑥ 현금	⑦ 물품	⑧ 합계
고려대학교	**	장학	1 명/개	4,000,000	0	4,000,000
고려대학교	**	장학	1 명/개	28,680,000	0	28,680,000
고려대학교	**	건축	1 명/개	500,000	0	500,000
고려대학교	**	장학금 등	1 명/개	500	0	500
고려대학교	**	장학금 등	1 명/개	500	0	500

### 3)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고려중앙학원의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는 6페이지 분량으로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명단을 보고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3](개정 2019.3.20)

###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 출연자(기부자) <span style="float: right;">(단위:원)</span>					
(1) 설립 시 출연자(기부자)					
① 성명 (사업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출연재산 종류	④ 출연가액	⑤ 이사장과의 관계	⑥ 비고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⑦ 성명 (사업자명)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 출연재산 종류	⑩ 출연가액	⑪ 이사장과의 관계	⑫ 비고
(사)수색방연사회복지회	*****_*****	현금	27,485,000	부	
(사)수색방연사회복지회	*****_*****	현금	23,718,000	부	
(재)고대교우장학회	*****_*****	현금	48,115,000	부	
(재)고대교우장학회	*****_*****	현금	34,250,000	부	
(재)고대교우장학회	*****_*****	현금	21,835,000	부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_*****	현금	30,000,000	부	
(재)두울장학재단	*****_*****	현금	44,362,000	부	
(재)두울장학재단	*****_*****	현금	26,042,000	부	
(재)미선장학회	*****_*****	현금	20,000,000	부	
(재)미선장학회	*****_*****	현금	20,000,000	부	
(재)방일영문화재단	*****_*****	현금	39,160,000	부	
(재)방일영문화재단	*****_*****	현금	28,480,000	부	
(재)삼성공장학재단	*****_*****	현금	35,100,000	부	
(재)삼성공장학재단	*****_*****	현금	23,400,000	부	
(재)삼성복지재단	*****_*****	현금	193,214,284	부	
(재)삼성복지재단	*****_*****	현금	127,380,952	부	
(재)삼성복지재단	*****_*****	현금	53,437,500	부	
(재)삼성복지재단	*****_*****	현금	51,037,500	부	
(재)삼성복지재단	*****_*****	현금	49,050,000	부	

#### 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정보를 국세청 공시(공익법인회계기준 기반)를 위해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 및 제반 문제점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인 6월 30일 이전까지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공시시스템에 상기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목적은 영리기업의 세무신고와는 성격이 상이하다.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으로, 2020년 공익법인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단순히 납세의무의 면제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결산서류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인 공익법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규정되었다. 따라서 특례규칙에 따라 회계를 보고하는 사학기관은 회계실체별 작성된 재무정보를 국세청 공익법인결산서류로 공시하기 위해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산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발생된다.

첫째,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방법이 사학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학기관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보다 더 상세하게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회계, 병원회계,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회계 보고를 하고 있다.

둘째, 특례규칙에 의해 작성하여 감사받은 재무정보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기 위한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 재무정보를 전환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정보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더불어 그렇게 산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 외에도 정보를 공시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의적 판단이다. 예를 들면,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분배비용으로 구분할 것인지 혹은 기타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 물론, 전기와의 비교기능

성을 고려해서 작성된다 하더라도 법인 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은 비용의 구분 이외에 재무현황을 보고하는 순자산의 분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례규칙의 대차대조표 순자산의 분류와 공익법인 공시서류의 재무현황 순자산의 분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p. 67 재무현황 참조).

구 분	특례규칙	공익법인 결산 공시서류(재무현황)
순자산의 분류	기본금 1. 출연기본금 2. 원금보전적립금/ 임의적립금 3. 기본금조정 4. 운영차액	1. 기본순자산 2. 보통순자산 3. 순자산조정

출처: 저자 작성

셋째, 1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가 작성되고 있다. 각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회계실체에 따라 지출 목적 및 수혜인원이 보고된다. 정보이용자 입장과 작성자 입장 모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면, 100페이지 이상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IV.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단계적 조화 방안

---

###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 가능성 분석

#### 가. 학교법인의 특수성 검토

공익법인 재무보고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공익법인이 제공하는 공익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부자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구별되고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교육을 주로 제공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무적인 여건은 어떠한지가 재무보고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익법인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주 재원이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의 등록금이어서 일반적인 기부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회계의 경우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다시 구분된다.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성되며, 교비회계는 다

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된다.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회계의 재무상태 및 운영실적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다. 특히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회계의 재원이 다른 회계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대학의 설립목적인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사학기관은 관리 목적상 다양한 회계 실체로 구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나. 학교법인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시 예상되는 회계상 문제점 분석

학교법인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시 예상되는 회계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을 감독하는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매우 중요한 관리 수단이다. 현재 학교법인의 회계는 예산회계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회계 보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례규칙에서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인 자금계산서가 학교법인의 예산에 해당된다. 또한 특례규칙은 예산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당연히 회계에 관한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예산에 관한 관리 부분이 결여된다.

둘째,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는 구조이다. 사학기관의 합산재무제표는 학교법인의 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를 합산한 재무제표이고, 종합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서 합산재무제표에 부속병원회계와 법인수익사업회계가 추가적으로 합산된 재무제표이다. 이렇게 사학기관의 회계 구분은 다양하기 때문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제표 구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공익법인 재무보고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사학기관의 회계정보 제공은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학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평가하며, 학교 경영을 감독·규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 재무보고의 목적에 충실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무보고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넷째,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기반하여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원론적인 기준이다. 그 반면에 특례규칙에서는 상세한 계정과목명세표와 다양한 부속명세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규칙 방식에 익숙한 사학기관에서 추가적인 지침 없이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다. 국공립대학 재무정보<sup>32)</sup>와의 비교가능성 검토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공포·시행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정보고를 하고 있다. 「국립대학회계법」은 제11조에 대학회계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대학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은 대학회계의 세입을 규정하고, 제4항은 대학회계의 세출을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로 정의하여 대학의 학년도와 일치시키고 있다. 제6항은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를 합한 종합재무제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회계법」 제6조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이 2015년 6월에 제정되었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재무보고서의 구성으로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 포함),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국립대학회계의 재무제표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32) 권선국·장지영, 「국립대학 대학회계 도입의 성과 및 과제」, 『경영교육연구』, 제32권 제5호(2017. 10.), pp. 48~49.

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 작성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잉여금 및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립대학의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명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39조). 재정운영표는 국립대학의 재정운영 결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보고한다. 수익은 수익의 원천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자체수익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비용은 인적비용,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학교운영비로 구분한다.

국립대학의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이는 기업에서 작성하는 자본변동표와 유사하다. 순자산변동표는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 변동을 나타낸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포함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국립대학회계법」 제11조제6항).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국립대학 전체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특례규칙은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립대학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라. 산학협력단 회계와의 비교가능성 검토

산학협력단이란 대학의 산학협력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2003년에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산학협력단은 조직상으로는 대학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며, 법적인 성격으로는 학교법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이다.

산학협력단의 수입, 지출, 재산 등의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산학협력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특례규칙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무제표 중 특례규칙의 자금계산서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현금흐름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특례규칙이 발생주의를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교하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은 발생주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칙의 종합재무제표는 법적 형식에 따라 산학협력단 회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사립대학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 마. 조화 가능성 검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법인에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직접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

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법인 재무보고 목적이 학교법인 재무보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두 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 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틀에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두 기준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학교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학부형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단기적 조화 방안

### 가.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해결방안 모색

40여 년간 적용하던 특례규칙을 폐지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 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한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조화 방안으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례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 1) 재무제표 명칭 변경

사립대학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이나, 공익법인에는 해당된다. 이에 현행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를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경우에 따라 국립대학과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해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로 변경할 수도 있겠으나, 사립대학이 공익법인이라는 점과 공익법인회계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내의 자산 구분도 유동자산·투자외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을 유동자산·투자외기타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부채 구분도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공익법인회계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

## 2) 발생주의 적용

현재 특례규칙에는 발생주의라는 표현이 없다. 이로 인해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 발생주의 회계의 계정과목 또한 특례규칙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발생주의를 전면적으로 사학기관 회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계적 사건을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하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를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학기관도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특례규칙에 명확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4) 주식

주식은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설명정보, 상세구분 정보 및 분석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으로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주식으로 기재하면 재무제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재무정보로 최근 급변하는 대학환경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정책, 정원

감축, 학사구조개편, 투자계획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운영성과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 세부내역에 대한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특례규칙에서는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로 세부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필수적 주식 기재사항 15개는 그대로 사학기관에 적용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

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현재 특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주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문제 해결방안 모색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법인의 특수성과 학교법인이 평균적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사학기관 별도의 공시양식을 규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양식의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구분을 사학기관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맞추어 법인일반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수익 세부현황과 비용 세부현황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는 세무와 관련된 꼭 필요한 정보만 공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둘째,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양식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 외부감사를 받는 사학기관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된 재무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보고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세청 공시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도 있다. 국세청 공시양식의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구분을 사학기관의 경우 법인일반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를 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하고 법인수익사업회계만 기타사업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

#### 가. 하나의 회계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사학기관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기반하여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원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재무제표 양식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 주체는 기획재정부이고, 사학기관 적용을 위한 지침과 재무제표 양식 제정 주체는 교육부일 가능성이 있어, 운영주체가 이원화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의 회계는 예산회계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특례규칙에 예산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으로 고려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된 예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사학기관의 회계기준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직접 적용 시 운영 주체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별도의 회계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특례규칙의 예산에 대한 조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에 관한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보고실체 수정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기관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법인회계를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성되며,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성된다. 교비회계는 다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된다.

### 2)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 추가

합산재무제표는 사학기관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인 법인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를 합산한 재무제표이다. 종합재무제표는 합산재무제표에 법인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를 합산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이다.

### 3) 부속명세서 추가

사학기관의 통일된 회계보고를 위해 특례규칙에서 사용하던 부속명세서를 추가한다.

### 4) 사업부문 수정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나, 사학기관은 회계 구분이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구분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5) 재무상태표 양식 수정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상태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한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사용할 비유동자산 과목과 보통순자산 과목을 추가한다.

### 6) 운영성과표 비용 구분 및 양식 수정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성과표 별지 제2호 서식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한다. 운영성과표의 사업비용 구분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능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 학습지원, 학생서비스, 보조사업, 기관 지원 등으로 구분한다.<sup>33)</sup>

〈표 IV-1〉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한 사학기관회계기준 구성(안)

구분	내용	수정 및 추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근거법령 수정
	제2조(적용)	- 적용대상 수정
	제3조(보고실체)	-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체 수정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제5조(재무제표)	-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 추가 - 부속명세서 추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사업부문 구분 수정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12조(유동자산)	
	제13조(투자자산)	
	제14조(유형자산)	
	제15조(무형자산)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제17조(유동부채)	
	제18조(비유동부채)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20조(기본순자산)	- 적립금의 적립 추가
	제21조(보통순자산)	
	제22조(순자산조정)	

33) 교육, 연구 및 봉사가 핵심 프로그램으로 간주됨. 학습지원, 학생서비스, 보조사업은 핵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보조사업은 기숙사, 식당 등을 포함함. 기관지원은 관리 및 모금 비용을 포함함.

〈표 IV-1〉의 계속

구 분	내 용	수정 및 추가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사업부문 구분 수정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제25조(사업수익)	- 사업부문 구분 수정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제27조(사업비용)	- 사업부문 구분 수정 - 사업수행비용 구분 수정
	제28조(사업외수익)	
	제29조(사업외비용)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제32조(법인세비용)	
제4장 자산· 부채의 평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제5장 주식	제40조(주식의 정의)	
	제41조(필수적 주식기재사항)	
	제42조(선택적 주식기재사항)	
	제43조(주식기재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 수정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 수정

출처: 저자 작성

이 방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하고, 단일 운영주체가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운영할 수 있어 실행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공익법인과의 정보 비교가능성도 향상될 수 있다.

---

## V. 결론

---

###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관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기부자, 주무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학교법인에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직접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법인 재무보고 목적이 학교법인 재무보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단기적 조화 방안으로는 40여 년간 적용하던 특례규칙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례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 재무제표 명칭 통일
- 발생주의 적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도입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식 기재사항 도입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법인의 특수성과 학교법인이 평균적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사학기관 별도의 공시양식을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양식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례규칙의 예산에 대한 조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에 관한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보고실체 수정
-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 추가
- 부속명세서 추가
- 사업부문 수정
- 재무상태표 양식 수정
- 운영성과표 비용 구분 및 양식 수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학교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부형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추후 과제 제안

### 가. 국공립 · 사립대학 간 정보가 비교가능한 대학회계기준의 제정 검토

사립대학은 특례규칙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다. 특례규칙이 적용되는 단위는 법인회계의 일반업무회계와 학교회계의 교비회계이다. 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이며 이에 추가하여 합산·종합재무제표가 작성된다.

국공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법」과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은 재무보고서의 구성으로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식 포함),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무제표는 별개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재무제표와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도 별개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다 같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므로, 당연히 재무정보도 비교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학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재무정보도 당연히 대학의 정보와 비교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대학회계기준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일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무정보의 비교를 통하여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학교회계기준의 제정 검토

학교의 재무보고는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일정한 틀에 의해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자산·부채·순자산과 수익 및 비용)가 동일한 형태의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원칙과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재무제표가 작성된다면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반감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설립별(국공립, 사립)·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 대학)로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설립별(국공립, 사립)·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공립·사립을 망라하는 학교에 적용되는 단일 학교회계기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립별·학교급별의 특수성은 단일 회계기준에서도 조문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외부회계감사 및 국세청 공시대상 학교의 범위 검토

「상증법」 제50조에서는 학교가 대표적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회계감사의무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르면 대학에 한하여 외부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증법」상 규모 면에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자산 100억원(또는 수입금액 50억원 또는 기부금 20억원)을 초과하는 유치원, 초중고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증법」상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국내 대표적인 공익법인인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증법」 제50조의3에서 국세청 결산공시를 하여야 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사립유치원, 초중고, 대학을 포함한다. 그러나 공시를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초중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되며, 공시가 되었더라도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전반적으로 학교의 국세청 결산 공시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교육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 교육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019.
- 교육부, 「사립학교법」, 2020.
-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20.
-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0.
-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20.
- 교육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2020.
-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20.
- 권선국·장지영, 「국립대학 대학회계 도입의 성과 및 과제」, 『경영교육연구』, 제32권 제5호(2017년 10월), pp.45~75.
- 권선국·전중열·장지영, 『대학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6.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2017.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2020.
-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
-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2018.
- 김영근·권선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9차 개정사항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0권 제5호, 2015. 10., pp.143~173.
- 김우영·마희영·배현원·설지영, 『사학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7.

-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7.
-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 법무부, 「민법」, 2017.
- 삼일회계법인, 『사립대학 회계기준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3.
- 정병수, 『사립대학 회계』, 세화사, 2010.
-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영리법인 세무가이드」, 2020.
- 한국사학진흥재단, 『2019 사립대학 재정분석보고서』, 2019.
- 한국사학진흥재단, 『미국과 일본의 주요 사립대학 재무보고서 사례』, 2008.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 한국사학진흥재단, 『특례규칙개정에 따른 사립대학 결산유의사항』, 201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2020.
-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 2017
-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 해설서』, 2017
- 한국회계연구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2003.
- Ives, M., L. Johnson, J. Razek, and G. Hosch, *Introduction to Governmental and Not-for-Profit Accounting*, Sixth Edition, 2009, p.497.

## 부 록

### 〈부록 1〉 학교법인 회계별 특징

#### (1) 법인회계

##### ① 일반업무회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법인이다. 「사립학교법」상 초·중·고 및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대학은 학교법인이 아니고는 설치 및 경영할 수 없다. 학교법인은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의 고유한 영역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단위를 법인일반업무회계라고 한다. 법인일반업무회계에는 사립학교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법인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학교 운영을 위한 전출금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② 수익사업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는 학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구분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일반업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의 재정건전성을 증가시키고 학교의 등록금수입의 기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재원확보 과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형태는 학교법인 내부에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인수익사업회계란 법인수익사업에 대한 회계보고만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교법인은 다양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형태가 단순한 투자나 임대업인 경우가 많다. 수익사업의 규모가 작고 수입이 미미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별도의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일반업무회계에 포함하여 보고하

는 것도 가능하다.

## (2) 학교회계

### ① 교비회계

학교회계의 가장 중요한 보고단위는 교비회계이다. 교비회계란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육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을 출연받아 이러한 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교의 회계단위이다. 교비회계는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등록금수입을 주재원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그러한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는 보고단위로 대부분의 학교 활동이 교비회계에 기록 및 보고된다.

2009회계연도 이전에는 교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관리하였으나 2010년 특례규칙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해 등록금을 주 수입재원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기부금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는 기금회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등록금과 기금회계의 구분으로는 등록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표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24일 「사립학교법」을 재차 개정하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였다.

일부 대학교는 교비회계 내부에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또는 특례규칙에 의한 회계단위가 아니라 대학교의 자체 회계관리 차원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단위이다. 이러한 특별회계의 예로는 학생식당, 기숙사, 평생교육원, 연구소 그리고 출판부 등이 있다. 대학교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교비회계 내의 자율운영기관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그 자율운영기관 성과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단지 내부 관리목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회계는 그 대학의 자체적인 회계단위이지 특례규칙상 규정한 회계단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특별회계는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예·결산서 작성 시에는 교비회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특별회계(평생교육원, 기숙사 등) 관련 수입비용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수입비용이므로 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등록금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학교기업회계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과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기업을 의미하며 그 학교기업의 설립은 부속기관형태로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에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교비회계 내에 학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비회계가 일정 자본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교비회계 재무제표에는 학교기업투자란 계정과목에 투자금액이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설치된 학교기업은 특례규칙의 계정명과 학교기업회계의 계정명이 상이함에 따라 예·결산 시 교비회계에 미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학교기업회계도 운영하는 회계에 모든 수입 지출을 반드시 교비회계에 포함(「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제4조 제3항)하여 작성하고 관련계정의 수입지출항목(예, 매출관련 현금유입 → 교육부대수입, 매입관련 현금유출 → 기타운영비)에 적절히 계상하여야 한다. 학교기업 수입비용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수입 비용이므로 예산 및 결산 시 교비에 포함되어 예산총계원칙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부속병원회계

부속병원회계란 의과대학교의 실습장으로 허가된 부속병원의 구분회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큰 회계분류는 대학교의 실습장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에 속한다. 하지만 부속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수입 및 비용, 관련 자산 및 부채가 학교회계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구분단위 회계가 부속병원회계이다. 부속병원회계는 특례규칙이 아닌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속병원회계는 병원회계처리준칙('90. 11. 9. 제정)이 1998년 폐지되면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98. 12. 11.)에다 종전의 병원회계기준칙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제정된 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2000. 2. 29. 시행)을 적용하다가 보건복지부가 일반병원과 일원화시킨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7호, 2003.9.15. 시행)을 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부속병원회계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외에 기본금변동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병원은 출연자에게 배당이나 임원에 대한 상여 등에 의한 처분이 없으므로 영리기업과 같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명칭을 기본금변동계산서로 하고, 기본금의 변동상태와 법인 등의 기본금 전출·입 사항, 잉여금을 기본금에 대체하는 사항 등을 표시해 준다. 대학병원은 「대학설

립·운영규정」(제4조: 별표2)에 의하여 교사로 구분되나, 「법인세법」제3조 상으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법」상 신고의 무가 있다.

학교법인 및 대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의 형태는 의과대학을 영위하는 대학교의 실습장으로 사용되는 부속병원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의 부속병원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지만, 수익사업체 형태의 병원은 학교법인의 법인수익사업회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출처:

## 〈부록 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의무공시 (별지 제31호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3. 20.〉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의무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 법정	[ ] 지정	[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공공기관 [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 개인 [ ] 기업 [ ] 개인·기업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기타							
⑮ 이사 수	명		⑯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재무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구분	⑱ 총자산가액	⑲ 부채	⑳ 순자산					
			㉑ 소계	㉒ 기본 순자산	㉓ 보통 순자산	㉔ 순자산조정		
㉕ 총계 (a=b+c)								
㉖ 공익목적사업								
㉗ 기타사업								
3. 자산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구분	㉘ 총자산가액	㉙ 토지	㉚ 건물	㉛ 주식 및 출자지분	㉜ 금융자산	㉝ 기타자산		
㉞ 총계 (a=b+c)								
㉟ 공익목적사업								
㊱ 기타사업								
4. 수익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구분	㊲ 총계	㊳ 사업수익					㊴ 사업외 수익	㊵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㊶ 소계	㊷ 기부금	㊸ 보조금	㊹ 회비 수익	㊺ 기타		
㊻ 총계 (a=b+c)								
㊼ 공익목적사업								
㊽ 기타사업								
5. 비용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구분	④ 총계	④① 사업비용					④⑦ 사업의 비용 등 기타	④⑧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④② 소계	④③ 사업 수행 비용	④④ 일반 관리 비용	④⑤ 모금 비용	④⑥ 기타		
④⑨ 총계(④⑨=④②+④③)								
④⑩ 공익목적사업								
④⑪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④⑨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④⑩ 적용회계기준						
④⑪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④⑫ 외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7쪽 중 제2쪽)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_____ 확인일자 :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법인명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법인등의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li> <li>2.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li> <li>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li> <li>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li> <li>5.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li> <li>6.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li> <li>7.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li> </ul>
	수수료 없음

(7쪽 중 제5쪽)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즈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⑥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7쪽 중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당기	전기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⑩사업외 손익
		사업손익							
		금 용				부 동 산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⑨ 기타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제기간)					전 기		
		당 기							
		합계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 계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 총 합계 (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권선국 · 장지영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법인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법인에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직접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법인 재무보고 목적이 학교법인 재무보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단기적 조화 방안으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재무제표 명칭 통일, 발생주의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도입,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식 기재사항 도입 등을 반영하여 특례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공익법인회계

기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별규칙의 예산에 대한 조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에 관한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학교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부형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제공 여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Harmonization Pla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

Sunkook Kwon · Jiyoung Jang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between corporations and provide various financial information to stakeholders. However,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school entities are permitted to apply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not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is leads to difficulties in directly compar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a school corporation with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a public corporation that applies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pplying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directly to a school corporation is expected to have a number of problems, but because it is a public corporation pursuing the public purpose of education, the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 of a public corporation tha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make decisions can be applied to the school's financial reporting. Consequently, we should seek to reconcile the accounting rules of private institutions with the accounting rule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is study, we present a harmonization pla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a short-term and long-term manner.

A short-term harmonization plan is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may be amended to reflect the un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names, application of the accrual basis, introduction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he introduction of essential note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s a long-term harmonizatio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ma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other words, we can make some modifications to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private institutions and establish new criteria by adding those that are not in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f the budget are not included in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if necessary, separate budget regulations/guidelines need to be established.

The harmonizatio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can provide current and future stakeholders with information that helps them assess the education service provided by school entities and their ability to continue to operate. In addition, data on whether resources provided by stakeholders, such as parents and the government, are being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rational decision-making, such as whether resources are provided to the schools.

## ■ 저자약력

### 권선국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 경영학 박사  
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현,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장지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계명대학교 강사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

발행	행	2021년 6월
저자	자	권선국 · 장지영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쇄	(주)프리비

---

